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개구부를 발판으로 임시로 덮어놓은 상태로 덮개 설치가 지연되거나 당일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빠짐우려 및 추락재해가 없도록 시인성 있는 표식 및 유동없도록 고정조치요망

※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미시행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